

의안번호	2126332
의 퇴 인	이종배의원
회 답 일	2024.02.19.
추계번호	24B0086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 담관리청, 담사용권자나 생활용수담·공업용수담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1)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함(제2항) －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u>100분의 10</u> 이내(제1호) →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 전전년도 생활용수·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담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u>100분의 30</u> 이내(제3호) → 100분의 22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의무규정
2	안 제44조의5 (담용수의 우선공급) 신설	• 담관리청이나 담수탁관리자는 담 주변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 주변지역에 담용수를 우선 공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대상 혹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4조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 미대상 담주변지역지원사업²⁾의 재원 조성은 담관리청³⁾이나 담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발전판매액 또는 용수판매액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임. 현재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조성 및 배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담별 생·공용수판매액의 22%, 발전판매액의 6%를 출연하여 조성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음.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담용수 출연금 비율이 상향되더라도 이에 따른 국가나

1) 「담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4조(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담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담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담으로 한정한다.

1. 담관리청이나 담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담·공업용수담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2	안 제44조의5 (댐용수의 우선공급) 신설	·미첨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댐용수의 우선공급(안 제44조의5 신설)

- 개정안은 댐 주변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에게 댐용수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댐 용수를 우선 공급해야하는 댐 주변지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현시점에서 댐 용수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방안 혹은 재원, 관련 사업의 내용과 범위,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를 구체화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
 - －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는 참고자료를 참조

※ [참고자료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

※ [참고자료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

※ [참고자료3] 댐별 출연금 세부현황(2024년도)

-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① 댐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건설한 댐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관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댐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댐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금 및 지원금 현황

(단위:백만원)

출연금				지원금			
2021	2022	2023	2024	2021	2022	2023	2024
68,457	74,666	76,365	90,762	68,457	74,666	76,365	—

주.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참고자료1]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개요⁴⁾

□ (사업목적)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도모⁵⁾

□ (대상 댐) 저수면적 2백만㎡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인 댐

* (지원대상) 환경부 소관 37개 댐 중 28개 댐

다목적댐(20)	홍수조절댐(3)	용수댐(5)
소양강, 충주, 횡성, 대청, 용담, 부안, 보령, 안동, 임하, 함천, 남강, 밀양, 군위, 부항, 성덕, 보현산, 영주, 섬진강, 주암, 장흥	평화의댐, 군남, 한탄강댐	영천, 운문, 사연, 대곡, 수어

※ (지자체댐) 용수댐 97개 중에서 지원대상 3개 댐이며, 실제 지원하고 있는 댐은 2개 댐(동북댐, 회야댐)

□ (사업구역) ① 댐 계획홍수위선 5km 이내 ② 댐 발전소 반경 2km 이내 ③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및 댐관리자 인정지역(수몰민이주단지 등)

* 전국 246개 기초지자체 중 59개 대상

□ (재원조성 및 배분)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댐별 생·공용수판매액 22%, 발전판매액 6%를 출연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전체 재원 조성

— 조성된 전체 출연금을 시행령의 산정기준에 따라 각 댐별로 배분

* '03~04년 용수매출 10~15% 발전수익 3%(연 150억↑), '05~'21년 용수매출 20%, 발전수익 6%(연 600억↑), '22~'24년 용수매출 22%, 발전수익 6%(연 750억↑)으로 지속 증액하였음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00	'03	'05	'08	'11	'14	'17	'21	'22	'23	'24
금액	84	136	425	532	537	737	614	685	747	764	907

4)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사업내용 및 사업시행자) ①지역지원사업, ②주민지원사업, ③기타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

구분	사업	사업내용	시행자
지 역 협의회결정	지역 지원	·소득원 발굴, 영농시설 및 생활인프라 구축 등 지역단위 지원 ☞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조성사업, 댐주변경관활용사업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주민 지원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주민단위 지원 ☞ 주민생활지원사업, 육영사업	수자원공사 (댐지사)
수 공 결 정	기타 지원	·지역상생사업, 법정사업, 홍보·거버넌스 운영 등 부대사업 ☞ 저수사용료보조, 사천만 인공방수로 지원, 물문화관 운영 등	수자원공사 (본사)

[참고자료2]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지방자치단체 현황⁶⁾

구 분		지방자치단체
한강유역	군남댐	(경기) 연천군
	한탄강댐	(경기) 연천군, 포천군 (강원) 철원군
	평화의댐	(강원)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소양강댐	(강원) 춘천시, 인제군, 양구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댐	(강원) 횡성군
	충주댐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금강유역	대청댐	(대전) 대덕구,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보령댐	(충남)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용담댐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완주군 (충남) 금산군
	부안댐	(전북) 부안군
영산강 섬진강 유역	섬진강댐	(전북)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주암댐	(전남)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곡성군
	수어댐	(전남) 광양시
	장흥댐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화순군
낙동강 유역	영주댐	(경북) 영주시, 봉화군, 안동시
	안동댐	(경북) 안동시, 봉화군
	임하댐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성덕댐	(경북) 청송군, 의성군, 영천시, 포항시, <u>안동시*</u>
	군위댐	(경북) 군위군, 영천시, 의성군
	보현산댐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천시, 포항시
	영천댐	(경북) 영천시, 포항시
	부항댐	(경북) 김천시
	운문댐	(경북) 청도군, 경산시, 경주시
	합천댐	(경남) 합천군, 거창군
	사연댐	(울산) 울주군
	대곡댐	(울산) 울주군
	밀양댐	(경남) 밀양시, 양산시
	남강댐	(경남)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하동군

주 1. 총 10개 시도, 59개 시·군·구

2. 안동시는 성덕댐 계획홍수위 5km 이내 지역은 아니나 협의회를 통해 대상에 포함

6)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참고자료3] 댐별 출연금 세부현황(2024년도)⁷⁾

(단위:백만원)

구분	출연금		
	댐용수매출(22%)	발전수익(6%)	계
다목적댐	63,263	23,598	86,861
소양강댐	11,561	7,717	19,278
충주댐	23,504	8,917	32,421
횡성댐	377	28	405
대청댐	5,210	1,255	6,465
섬진강댐	676	741	1,417
용담댐	2,853	1,169	4,022
주암댐	4,338	437	4,775
보령댐	1,048	—	1,048
부안댐	252	—	252
장흥댐	659	8	667
군위댐	182	4	186
부항댐	148	11	159
남강댐	1,127	338	1,465
보현산댐	110	5	115
성덕댐	77	7	84
안동댐	3,872	1,355	5,227
임하댐	1,856	246	2,102
합천댐	4,925	1,205	6,130
영주댐	—	105	105
밀양댐	488	50	538
용수댐	3,901	—	3,901
수어댐	1,235	—	1,235
영천댐	963	—	963
운문댐	1,202	—	1,202
대곡댐	353	—	353
사연댐	148	—	148
총 계	67,164	23,598	90,762

7) 환경부 수자원개발과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지수현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35	zisu37@nabo.go.kr